

정책자료 2008-08-2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 자활사업 참여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Ⅱ

-자활사업 참여-

정책자료 2008-08-2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이태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제8-142호(94.7.1)
주소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02-380-8000(대표)
팩스 02-352-9129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가격 5,000원
인쇄처 대명기획(02-2263-129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59-6 93330

편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평가센터장

최연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I. 개요	1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1
2. 사업의 개요: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1
3. 자료의 개요	3
II. 주요 내용 및 결과	8
1. 주요 내용	8
2. 결과	9

1. 기초보장평가센터 소개

□ 설립목적

- 기초보장·자활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과 자활정책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기초보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설립

□ 사업내용

- 기초보장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 제도운영과 예산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정책에 관한 심층 연구 및 빈곤통계 연보 발간
- 빈곤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 운영
-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

2. 사업의 개요: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가. 사업의 목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심층적 인터뷰, 자문, 토론을 위한 평가단 및 포럼을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뢰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함.

2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 이에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증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실무자와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기초보장제도 관련 중심의 업무수행 체계와 관련된 개선사항 도출, 모니터링 계획 및 실행결과 등을 논의
 - 지속적인 현장실무자의 정책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신뢰성 및 건전성 제고

나. 추진 방법 및 과정

-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심으로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
 - 52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시도별 3~4인)을 선정하고 소속 지자체 평가에 가점 부여
 -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특성
 - 52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은 남성 19명, 여성 33명으로 구성
 - 이중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9명,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3명임.
 - 각각의 업무를 살펴보면, 18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4명은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인지역 13명, 경상지역 13명, 강원·충청지역 13명, 전라·제주지역 13명으로 구성됨.
 - 정기적인 포럼 운영 및 Workshop 개최
 - 제도 평가지표별 쟁점을 중심으로 포럼 개최 (분기별 1회)
 - 시군구·읍면동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평가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기초보장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모니터링 연구수행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Workshop 개최를 통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제안 (1회)

□ 모니터링 포럼의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 및 판정 이후 확인 및 점검(I)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참여 및 탈수급 방안 모색, 부정수급 제재 방안(II)
- 추정소득 부과 및 보육료 지원에 따른 행정처리 등 문제 진단, 해결 방안(III)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별영향평가(IV)

다. 추진결과 및 활용

- 기초보장평가센터와 현장실무자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된 모니터링 포럼의 성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 시군구별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각 시군구별 통합조사팀 및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초보장제도 운영 및 개선 관련 모니터링 연구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으로 활용

3. 자료의 개요

가. 자료작성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개최

4 2008년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및 관리, 탈수급의지,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총 33명의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관련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제출하고,
-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나. 응답자 특성

- 총 33명의 응답자의 지역은 수도권 지역 10명, 대도시 7명, 중소도시 8명, 농어촌 지역 8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세부 지역 단위는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명,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 담당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는 20명,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는 13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사례 번호	지역	시군구/읍면동	업무
1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
2	수도권	시군구	통합조사
3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4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5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6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7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8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9	수도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0	수도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11	대도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2	대도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13	대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14	대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15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6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7	대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8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19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0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21	중소도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22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3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24	중소도시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5	중소도시	시군구	통합조사
26	농어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27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28	농어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29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30	농어촌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31	농어촌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32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33	농어촌	시군구	통합조사

다. 질문의 구성

조건부과제외자 관련 이슈

- 조건부과제외자의 정부 지원 및 관리

6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 현재취업창업자의 수급 탈피 의지
- 조건부수급자 : 자활프로그램 선정 과정
 - 근로능력 점수표의 적절성
 - 자활프로그램 배치과정
-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
 - 부정수급 및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

라. 자료의 의의와 활용도

-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평가들에는 담겨지기 어려운 제도시행 현장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의의를 가지며,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의 질적인 지평과 깊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질적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

로써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 제도의 일선 담당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급자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제도 시행주체의 인식 및 태도가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II

주요 내용 및 결과

1. 주요 내용

-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은 있지만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진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생활환경이 일반 수급자 가구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 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고취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다양한 행태의 부정수급 행위를 유발시키고 있었음.
- 자활사업이 실질적인 탈빈곤 장치로써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설계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한계, 자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통합급여 원칙이 수급자의 탈빈곤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 발생 시 이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위한 적절한 행정력 및 기반이 부재함.
 - 자활사업 예산, 담당 인력, 기관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내용, 사례관리 체계 등이 열악한 수준이며, 자활사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자체가 주로 단순노무로 이루어져 있어 자활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결과

가. 조건부과제외자 관련 이슈

<p>1-1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중에 건강이나 가구여건의 어려움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었으면 하는지, 혹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건부과제외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어 조건부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p>#18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 함 - 수시조사에 의한 가구여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짐
<p>#21 중소도시,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로 지원을 하고 있음 - 분기당 1회는 필히 출장하여 확인하고 있음
<p>#30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들에 대한 조건부과 여부는 확인조사를 통해서 확인함. 확인조사 기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수급자의 직접 신고가 없으면 담당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p>#11 대도시,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선택병의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급여를 통제하고 있음. 좀 더 완화되기를 희망함. - 조건부과제외자들의 상황이 호전되면 소득을 부과하나 수급자 수가 많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임
<p>#10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은 못 받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함
<p>#33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음. 법적기준에는 벗어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럴 경우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p>#24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관련 지원 및 간병·장애 가구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별 경과 시 소득조사 실시함
<p>#29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는 읍면에서 관리함

10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p>#27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p>#13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지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제도 악용과 의지 미약으로 생각됨. 생계비 보전 이외의 다른 도움은 실제적으로 어려우며, 도우미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은 어려움. 대다수의 수급자들이 생계비만 많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가구여건 중 미취학아동 양육일 경우는 확인하기 어려움. 증명서 발급하여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은 한 확인이 어려워 수급자의 대답을 유도함
<p>#06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간병이나 보육에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자활의욕이 생길 것으로 사료됨 - 조건부과 이전 본인의 취업의사를 확인하고 취업이 안될 시 조건 부과함
<p>#31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이나 가구여건의 어려움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 조건부과제외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어 조건부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선된 상황 자체가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수급자에서 보호종지가 될 수 있다고 혼자서 짐작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조사는 1년에 1회 정기 확인조사나 중점관리대상자 수시 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음
<p>#16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유도함
<p>#25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비 지급은 물론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한 가구여건에 따른 문제별 추가 지원 필요(긴급의료비 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등) - 행정적으로 드러나는 자료 이외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p>#28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가 간병이나 양육이 필요한 가구원을 맘 편히 맡기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시설, 간병인서비스, 방과후 교실, 주간보호시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자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적시에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부분 확인조사 시 조사 하는게 전부임. 또한 신고의 의무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p>#07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조건부과제외자들의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고, 혹시 조건부과가 되는 대상으로 상황이 개선된다하더라도 일용직 근로 등을 하거나 수급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p>#08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센터 등을 연계하여 쉴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주어야 함 - 상황이 개선되어 조건부과를 받아야 할 경우 바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함. 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입소했다거나 간병중인 세대원이 사망이나 장기입원하실 경우 조건부로 선정하거나 소득신고를 받음(분기조사를 통해 조사)
<p>#23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 양육 또는 간병 등의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 중 일부는 보육시설의 여건과 자활근로시간, 또는 입원 중인 가구원의 간병서비스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 - 진단기간 경과, 또는 가구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가 상담을 요구하고 추가 서류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p>#01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자가 있는 경우 간병인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이 쉽지는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조건부과 제외를 해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임. 장애아이나 치매노인 등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의 경우 이들을 수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시설확대 등 더욱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원이 되었으면 함. 바우처나 장기요양보호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이용사항을 항시 조사하여 상황에 맞게 조건부과를 함 - 학교졸업자 등 시기가 확실한 경우 상담이 쉬우나 진단서 제출 등 주기적 관리의 어려움
<p>#17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간병 등의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동사무소에서 연간조사계획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짐
<p>#05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현재 실제적인 생계급여가 자활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음 - 개선이 된 경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조사 때마다 받고 있는 상황임
<p>#19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수급자는 더 많은 현금 지원을 원하므로 조건부과제외자들 대부분은 조건부과제외자로 계속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음. 가구여건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활참여를 꺼리는 경우에 자활참여를 일시 중단시킨다고 해서 가구여건이 개선되거나 건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음. 참여가 곤란한 원인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이 요구됨. 예를 들어 미취학아동양육의 경우 보호자가 양육을 긍정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양육을

12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p>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에 대한 조사 : 해당자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음
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도움을 더 주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조건부과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이 없으면, 일반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와 의료가 주어지기 때문임 - 조건부과제외자들은 분기마다 소득 및 가구여건 조사를 하며, 집중관리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담당자의 업무소화능력과 담당 수급가구 수에 따라 관리수준이 다름
#02 수도권,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액 인상 필요함
#04 수도권,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중 질병자, 장애인, 아동 등의 양육이나 간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바우처제도,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지원제도가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아 이용치 않는 경우도 있고, 가족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조건부과제외를 받은 자들이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음. 지원제도가 없어서 라기 보다는 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건부과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종용하거나 소득활동을 시작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음
#12 대도시,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담을 통하여 조사를 함

사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 중 비공식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 그런 수급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그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하는지 알려주십시오.
#18 중소도시,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미만 - 추측일뿐 조사 불가 함

II. 주요 내용 및 결과 13

<p>#21 중소도시, 읍면동</p>	<p>- 우리 동에는 어르신이 몇몇 있으며 대부분 소득이 반영됨/ 젊은 클라이언트 중 비공식소득자는 없음</p>
<p>#30 농어촌, 읍면동</p>	<p>- 조건부과 제외자중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대학생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등 비공식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차라리 근로무능력이라며 생계비 올려달라고 항의 하는 수급자보다는 자립을 위한 비공식적 근로이니 넘어가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함. 특히나 대학생이 학비와 용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소득을 30%공제를 해준다 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듦. 조사방법은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상담중 확인할 경우 소득 산정함</p>
<p>#11 대도시, 읍면동</p>	<p>- 공부상 조회되지 않는 근로를 하고 있으리라 사료되며 실질적 근로무능력의 진단서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부족하여 어느 정도는 근로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번 진단서를 제출하면 호전되는 대상자는 거의 없는 실정임(정형외과 진단 일부제외)</p>
<p>#29 농어촌, 시군구</p>	<p>- 조건부과제외자 확인조사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5% 이하로 추정됨</p>
<p>#27 농어촌, 시군구</p>	<p>- 거의 없음</p>
<p>#10 수도권, 시군구</p>	<p>- 80%정도는 근로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조건부과제외자라하면 개별여건(간병자, 양육자 등), 대학생, 완전불완전취업자, 자영업자, 환경적응이 필요한자 등임. 이들은 모두 근로능력자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근로를 한다고 봄. 그러나 생활여건으로 보아 수급의 중지가 어렵기 때문에 중지보다는 공식적인 일자리나 취업교육 등으로 연계가 필요함</p>
<p>#33 농어촌, 시군구</p>	<p>-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음. 특히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없다고 하면 소득을 잡기 어려움. 추정소득을 부과하려고 해도 대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1인가구라서 소득을 잡으면 중지될 가능성이 많음. 대학들은 대부분 외지에 있어서 소득 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p>
<p>#24 중소도시, 시군구</p>	<p>- 비공식적 근로자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노력으로 생각함. 근로상태에 따라 연간·반기·분기·수시조사를 통해 확인함</p>

14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p>#13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0%는 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소득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 다니며 조사할 수 없는, 근로소득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방안이 필요함 - 그런 수급자를 볼 때 생각 : 생계급여 지원 받고, 근로소득 있음에도 자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회의감이 생김 - 비공식적으로 근로를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 통한 생활실태를 보는 것 외에는 알기 어려움. 통장들을 통해 생활상을 전해 듣는 정도임.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는 수사관이 아님
<p>#06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움. 수급자가 아닌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수급자 자녀는 아르바이트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음. 소득 신고 시 본인이 받는 급여가 줄어듦을 알고 소득신고를 꺼려함. 수급자의 입장에선 소득신고를 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되도록 신고 꺼려함이 이해가 됨
<p>#31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적으로 15% 정도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날 때가 많으며, 자주 접촉을 통하여 소득신고를 하도록 유도함
<p>#16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 많음. 소득부문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p>#25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되는 수급을 조건이 탈피되었다고 스스로 보고하는 수급자는 전무한 실정임. 수급자는 부여되는 수급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 담당 공무원의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 관리 필요함
<p>#07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 중에 비공식적으로 근로하는 대상은 70%가량으로 보여짐 - 도움 받는데 길이 들여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함. 소득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몸이 안 좋아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두었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소득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p>#28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정도 되는 거 같으며 추가소득 확인 후 반영을 하고는 싶으나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p>#08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답하기는 하나 비공식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람까지 조사 관리하기에는 무리임.
<p>#23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간병으로 조건부과 제외 된 자의 경우는 다른 사유보다 비공식적인 근로비율이 높은 것으로 짐작함 - 이 경우 소득을 부과 하겠다고 하면 근로중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오

	<p>히려 서로간의 불신만 남기게 되어 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진단서 제출 후 비공식적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경우는 소득을 반영하고 조건부과 또는 재진단을 명하고 있음</p>
<p>#01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이상이라고 생각되며, 일단 일하는 것은 좋으나 그 또한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상자 간에 있어야할 신뢰감이 무너져 일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도 함 - 사전 방문 약속을 하고 가정방문을 가는 것이 원칙이나 불시의 가정방문과 통장(지역 인맥)님들에게 그들에 대한 수시확인을 부탁하여 관리함
<p>#17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정도라고 생각되며, 예를 들면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 가구 여건의 경우 파트타임 소득 등은 파악이 곤란함. - 동사무소에서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조사 시 상담을 통하여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음
<p>#05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상이라고 생각함. 정말 세금이 세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자들에게 더욱더 도움을 주었으면 함 - 그런 경우 기간을 정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확인조사를 하지만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은폐하면 알 수가 없는 상황임
<p>#19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 중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약 40%는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봄. 양심적으로 성실 신고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가구여건이나 경증장애인, 대학생 등에 대해 수급자 확인조사 시 똑같이 소득신고를 안내하고는 있으나 소득신고를 하는 수급자는 거의 없음
<p>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부분이 비공식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비정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어려움. 예를 들어 아이가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젊은 여성 수급자가 밤에 아이를 이웃에 사는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발각되었다더라도, 그때만 친구가 아파 대신 하루 봐주는 것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있었음.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실제로 보내면서 안 보내는 것으로 하는 경우, 심증을 가지고 잠복해서 어린이집 차에 타는 것을 잡은 경우도 있음. 있는 그대로 어린이집 원장까지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
<p>#12 대도시,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 중에서 양육, 대학생, 전역자, 보장시설 퇴소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PC방, 식당 등).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여서 열심히 살

16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p>고자 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미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경우 보육시설 이용여부, 대학생인 경우 등록금 마련 여부 조사 등을 통해 근로활동 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02 수도권,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제외자 중 20~30%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은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한 자들로 명백한 사유로 조건부과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임
#04 수도권,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과 제외자 중 비공식적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다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로 현행 지원제도의 내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생계형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소득활동 사실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사례 1-3	<p>(현재취업창업자 관련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수급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수급자들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또는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수급에 머무르려고 적당히 일하는 수급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수급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지만 가구상황, 지역상황, 개인의 낮은 인적자본, 연령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워하는 수급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없음(국가적인 현실, 국민성과 연관) -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사업의 부도 등을 수없이 보고 있는 현실에서 가진 것 없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을 바라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며 지금까지 수급자에게 탈피하여 정상적인 자활을 진정하게 이룬 가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 지 정말로 묻고 싶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을 키우면서 창업을 한 대상자가 있었으나, 자녀 1명은 취업을 하였고, 다른 자녀의 경우는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수급자로 계속 보호되길 희망하는 경우를 봄 -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어 지역자활센터 등을 연계해 준 경우도 있으나, 신청인의개인적인 한계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통해 수급을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수급자는 대부분 젊은층임. 이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려 수급자가 중지 될 경우 기존에 받던 혜택이 한꺼번에 중지됨. 특히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학비의 중단

II. 주요 내용 및 결과 17

	과 의료급여 혜택의 증지에 큰 부담을 갖고 있음. 이런 이유로 취업보다는 아이들이 성장 할 때까지는 단순노무(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직종)에서 일하려고 함
#11 대도시, 읍면동	- 취업이나 창업을 할 만한 수급자는 극히 드뭄. 지식의 부족, 체무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에 해당
#10 수도권, 시군구	- 30%정도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듦. 왜냐하면 같은 노력으로 수급자와 차상위의 정부지원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니 좀 더 고생하고 낮은 질의 삶보다는 유지하고 있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혹 중지되었다가도 기회라고 생각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보호대상자 범주에 들어오려고 애를 씀
#09 수도권, 읍면동	- 수급자로 남아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에 수급자로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본인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수급을 탈피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수급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분산하고 자발적으로 수급을 탈피하는 가구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어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함. 이번엔 발표한 수급자 대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수급자 탈피를 방해하고 만성적인 수급형태가 이어지며 수급자 신규신청 증가 가능성이 심히 우려됨. 무이자 대출 등 수급자 본인들에게 책임의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됨
#33 농어촌, 시군구	- 수급에 머무르기를 희망함 - 가끔 능력이 있지만, 상황이 수급자를 만든 경우는 많이 안타깝다. 정부에서 이들의 수급 탈피를 위해 노력 했으면 좋겠다. 생활안정자금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부족함
#24 중소도시, 시군구	- 근로가능자 중 일정대상자는 수급자 탈피의지 있음.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점 마련 필요 - 취업에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취업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함
#29 농어촌, 시군구	-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으로 탈수급 비율이 낮으며, 취업이 어려운 지역임. 수급자와 차상위의 급여 및 지원내용이 크게 격차가 있어 수급자로 안주하려하는 모습이 있음 - 실제 생계급여 지원보다 차선적 지원인 보육료, 교육비, 중식감면, 이동통신지원 희망함
#27 농어촌, 시군구	- 노동능력자 중 30%정도로 지역여건상 일자리가 거의 없으며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안타까움 - 취업을 하고자 하여도 일일고용, 산불유급 감시원, 자활사업 등으로 고소

	<p>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창업의 경우 보증인이 없어 용자금 대출도 불가능한 현실이며 인구가 적고 소득이 적어 물가대비 생계연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p>
<p>#13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창업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해 중지는 어려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수급에서 탈피하려는 수급자는 1%도 안 된다고 생각됨. 취업이나 창업을 해도 당장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대학특별전형, 입사에 일정비율 인센티브 부과, 곧 실시될 전학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만 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급권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기초수급제도 및 자활사업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며 그런 수급자들을 보면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음. - 취업이나 창업으로 중지가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생계비, 주거비 이외에 부수적인 혜택을 당분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짐. 수급을 오래 받은 사람일수록 자립의지가 낮으며, 창업 후 수급에서 탈피될까 봐 우려하여 일부러 하지 않기도 함. 대부분 수급에 연연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더라도 생계급여와 차이가 많지 않으면 각종 부과급여가 많은 수급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바 탈피 후 고생하면서 생활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차라리 일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 것을 더 희망하는 복지병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듦. 우리 조직 내에서도 퇴직 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65세가 넘으면 퇴직금을 다 소모했다고 하여 수급자 혜택이나 봐야겠다는 등의 농담을 많이 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듯함 - 근로의욕은 높으나 연령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매우 안타까움.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가구상황 중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는 보육시설 무료,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있는 가구는 돌보미 등을 파견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역사회 연계가 잘 되기 때문에 가구상황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 도리어 말이 안 된다고 봄. 수급을 받지 않는 일반인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활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수급자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음. 수급자들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 자금 및 경험 부족으로 창업 후 성공률이 낮으며, 취업자는 조금만 힘들어도 퇴직하는 등 이직률이 잦은 편으로 근로의지가 일반인에 비해 낮은 편임
<p>#06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나 수급자를 탈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됨. 급여가 나가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많음 -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에게 교육급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p>#31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수급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수급자들은 우리군의 경우 5%도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일하는 수급자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며 또 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너무 많으며 중지될 경우 받던 복지수혜가 한 번에 다 중지가 되므로 오히려 돈을 더 조금 받고 수급자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정말 이 사람들이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개별 급여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 -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수급자들을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려는 하고 마음이며, 한편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여 마음이 아픴
<p>#16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중 급여중지가 될 것 같으면 중도에 취업이나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임 - 자활사업의 유형을 좀더 세분화해야 함. 주기적인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격증이나 기술을 획득할 필요성이 절실함
<p>#25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로서 누리는 혜택이 저소득 근로계층이나 영세 사업자로 생활하는 것보다 나은 현실에서 수급자로 머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됨. 탈수급과 동시에 모든 급여에서 제외되는 현행 정책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임 - 정부의 적극적 평등정책 필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 필요, 즉 농촌 지역, 낮은 학력, 취업하기엔 많은 연령일지라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 권리가 있다고 봄. 부족한 만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정부 지원이 필요로 함
<p>#28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하다보면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보이는 수급자가 40%정도는 되는 듯함.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층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취업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오히려 계산을 하고 보면 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함. 이로 인해 탈피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 이런 수급자를 보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됨. 이로 인해 빈곤이 되물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좀더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러한 핸디캡을 내딛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듬
<p>#07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이나 취업을 하려고하는 사람들은 수급자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며 근로를 하기보다는 차상위 자활로 선정을 받기 원함.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근로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하고 싶을 때만 근로를 하려고 하여 실질적인 자활유도에 어려움이 있음

<p>#08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함. 그동안 국민기초업무를 6년 정도 보았는데 2가구 성공하였음. 물론 수급에 머무르려고 적당히 일하는 수급자도 많음.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 작년 이맘때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수급자를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창업을 하였음.^^ 기업재단에서 도와주셨는데 아주 기뻐함. 1년이 지난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수익은 많이 내질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면 좋겠음. 현장에 이런 민간 기업재단관련 자료를 배포해 주면 좋겠음
<p>#23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 보다 수급자로 안주하는 것에 대한 계산 자체를 해 보지 않고 막연히 수급자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기도 함. 그러나 현행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나 감면 혜택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고 있어 이것을 스스로 포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기대일 것임. 어쩌면 차상위 계층의 자영업자 보다 수급자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은닉하고 수급자 범위 내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때가 많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평생 수급자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안타까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자녀가 성장하면 언젠가는 부양의무자 때문에라도 수급자에서 중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음. 어중간한 연령이 되어 수급자에서 중지되어 결국엔 노년엔 국민연금급여의 수급자마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음. 재무상담가들이 재무 설계를 하듯이 사회복지사들이 가구의 여건을 심층 상담하고 종합적인 복지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함. 또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지지 못해 아쉬움 - 경기 불황 등의 여건 등 수급자 개인적인 여건이 아닌 외부요인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거불안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취업이동을 하기 어려운 점.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연령이 되어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직업 훈련이나 자활사업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p>#01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을 받으면 그것에 대부분 안주하려고 하며 탈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막상 그런 기회가 오면 거의 피하는 상황임. 취업, 창업을 통해서 수급자 탈피하려고 하는 수급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받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에 대해 수급자들이 너무나 길들여져 있음을 절실하게 느낌. 예전에 소득 활동을 해 본 경우는 앞

	<p>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용직 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분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자금 등을 용자받아 자활을 하고 싶어도 용자를 해주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이 수급자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수급자들을 두 번 좌절하게 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듦. 수급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꼭 필요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17 대도시,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미만으로 보고 있음. 수급자 대부분이 수급자를 탈피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함. 자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 취업 후에도 계속 보호받고 싶어함 - 그런 수급자를 분석 없음
#05 수도권,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없다고 보임. 저소득층 채용을 안내해도 돈을 더 못 받는다는 말과 수급자 중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하려고 하다가도 안하고 있음. 정말 이런 경우 한번 수급자는 영원한 수급자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지속적인 저소득층 양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위 수급자에게 들어갈 예산을 이런 분들에게 투자하여 수급자 탈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9 중소도시,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들어 저소득에 대한 취업확대로 인해 각 기관에서 저소득 취업관련 추천서를 받고 있어, 수급자에게 취업안내를 하면 대부분은 자신이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막상 취업의뢰가 들어오면 본인의 질병 및 자녀양육 또는 적성 등을 핑계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 취업률은 고작 10% 미만이라고 판단됨 - 오히려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계층 중에서는 일자리 알선을 희망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이러한 수급자들의 태도는 현재의 법령 및 제도가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생각이 듦. 대개의 경우 안주하는 수급자들을 보다가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을 만나면 성공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더 해주고 싶은데 제도나 지원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있었음.
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창업의 의지가 높은 사람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지 않는 것 같음. 역으로 수급자가 취업, 창업의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임. 또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나, 수급권을 박탈당하면, 동시에 자녀 수업료, 의료, 기타 후원이 중지되는 것을 더 큰 손해로 여기는 것 같음. 이러한 수급자를 볼 때마다, 수급권에 부여하는 권리가 너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일부 수급자들은 경제적으로 겪는 고통이 심해서 수급권이 국민의 최저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의지만 있다면 취업, 창업을 위한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며, 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p>#O2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수급자격을 탈피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있으며 수급자가 되어 주어지는 많은 혜택에 대한 의존성이 강함. 장애, 질병, 노령, 연소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급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함. 자활사업의 종류 및 인원도 한정되어 모든 조건부수급자를 수용할 수도 없는 현상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생계급여도 받고 근로활동도 가능하게 함 - 개인 및 가구의 여건으로 취업의지는 있으나 취업이 힘든 경우가 있을 경우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줌
<p>#O4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는 상당수 있다고 생각은 드나 실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바로 수급자 보호 중지되는 것을 원하는 수급자는 매우 소수인 것으로 판단됨(본인 스스로 수급자 보호를 포기하는 경우가 연 1~2명 수준임). 이러한 이유로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최저생계비 기준은 탈피했으나 그것이 곧바로 자활기반을 조성했다고 느낄 수 없음은 물론 수급자로서 지원받는 부가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들에 대한 지원 중단까지 커버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수급자 보호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더 나아가서는 수급자로서 받게 되는 지원을 부가적인 수입으로 얻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물고자 하는 경우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판단됨 - 본인은 어떻게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탈피하고 싶으나 가구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어떻게든 수급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방법이 없는 찾아 주려고는 하나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임.

나. 조건부수급자 : 자활프로그램 선정 과정

<p>2-1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은 근로능력점수표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점수를 선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재량점수의 경우 담당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점수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배점 또한 20점으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	---

	<p>있습니다. 이러한 재량점수 부과 시 본인만의 특별한 기준이나 방법이 있으신지요? 재량점수 부과 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본인이 부과한 재량점수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후회한 적이 있으신지요?</p>
<p>#18 중소도시, 시군구</p>	<p>- 적절하다고 생각함. 근로능력 점수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적용하며 후회한 적은 없음</p>
<p>#21 중소도시, 읍면동</p>	<p>- 조건부수급자는 노동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함. 점수를 통해서 근로능력을 판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부문에는 다양한 근로를 접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p>
<p>#30 농어촌, 읍면동</p>	<p>- 선발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음. 이유는 연령이 높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연령이 낮더라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기 때문임. 건강상태 또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어도 체력적인 면에서 떨어져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수급자들도 있기 때문임</p>
<p>#11 대도시, 읍면동</p>	<p>- 대상자가 성향을 고려하여 작업 배치 시 적극적인 의사 표명 시 재량점수를 많이 주고 있으며 근로능력 점수표는 형식임</p>
<p>#33 농어촌, 시군구</p>	<p>- 근로능력 점수표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움</p>
<p>#24 중소도시, 시군구</p>	<p>- 적절함 - 건강상태 및 근로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함</p>
<p>#29 농어촌, 시군구</p>	<p>- 수급자 대부분 근로무능력자(83%), 조건부수급자 66명(2.1%) - 현 자활사업이 개인의 자활을 도모하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함. 노동능력이 충분한 조건부 수급자는 20%이하고, 시장형으로 나가기 어려므로 부족함. 조건부수급자 판정 시 자활참여가능여부 조정, 불참가능자에게 자활사업에 대해 설명 본인 취업하도록 유도함</p>
<p>#27 농어촌, 시군구</p>	<p>- 근로능력점수표는 주로 자활계획상담 후 조건부 수급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점수를 맞추는 편임(욕구가 원하는 프로그램과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는 한)</p>
<p>#13 대도시, 시군구</p>	<p>- 점수 차등화가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좀 더 차등화가 필요함 - 점수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대상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고, 대부분의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p>

24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p>#06 수도권, 시군구</p>	<p>- 재량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p>#31 농어촌, 시군구</p>	<p>- 자활프로그램 근로능력점수표 중 학력에 의해서 근로능력점수표를 차별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력에 의한 점수표는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 재량점수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개인 성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므로 담당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재량점수를 잘 적용하겠지만, 부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대충대충 적용할 소지가 많음</p>
<p>#16 대도시, 시군구</p>	<p>- 신청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여함</p>
<p>#25 중소도시, 시군구</p>	<p>- 연령, 학력 기준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근로능력점수표에 따른 자활 프로그램 배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현실, 근로의욕과 같은 재량 점수에 의해 상위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p>
<p>#28 농어촌, 읍면동</p>	<p>- 대체적으로 연령, 건강상태는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직업이력 및 학력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재량점수 부분에서도 다른 선발기준을 추가한다든지 점수 비율을 조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듦 - 특별한 기준이나 방법은 없음. 보통 20점 중 평균점수인 10점을 주며 상담결과 노동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가 다른 선발기준으로 점수가 부족 할 시에 20점의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재량점수 부과하기는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제대로 점수를 부과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음</p>
<p>#07 수도권, 읍면동</p>	<p>- 점수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알선하는 것이 더 적합함</p>
<p>#08 수도권, 읍면동</p>	<p>-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활의지와 욕구 담당자의 의견등도 들어가야 함 - 재량점수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에 어려움은 없음</p>
<p>#14 대도시, 시군구</p>	<p>- 적절함 - 수급자 신청자의 경우 자활의욕 높은 경우 극소수임. 대부분 자활의욕 없고 수급 탈피 의사가 낮아 재량점수에 대한 적용상 갈등 없이 일처리 함</p>

<p>#23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점수표의 세분화가 필요함. 직업이력이나 유사직종 이력, 자격증 또는 훈련 경험 등에 대한 점수 배점이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재량점수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20 점을 부과하고 있음. 재량점수를 주어 조건부과를 제외하거나 유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p>#01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한 일자리가 많아 근로능력 점수표에 의해 프로그램 배치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을 듯함 - 수급자가 원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재량점수가 부여되는 측면도 있음. 재량점수가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며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성향이나 성격 등을 담당자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지며, 가시적인 면(연령, 건강상태, 직업 이력 및 학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점수기준이 높다보니 재량점수가 낮아 사실상 성실도나 근로욕구, 가구여건 등을 볼 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 서비스를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p>#17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연령 외에는 선발기준이 애매하여 거의 연령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 기준에 대한 세분화기 필요함 - 재량점수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상담 시 본인 의사에 따라 비취업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p>#15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함 - 수급자 신청자의 경우 자활의욕 높은 경우 극소수임. 대부분 자활의욕 없고 수급자 탈피하려는 의사 없어 재량점수에 대한 적용상 갈등 없이 일처리 함
<p>#05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특별한 척도가 없다면 현재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재량점수에 있어서도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고 기타의 사유로 인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재량점수가 매우 좋은 재량행위가 될 수 있음. 또한 재량점수도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아 객관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p>#19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이 시장경제논리보다는 일자리 만들기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연령, 건강상태 외에 다른 지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봄.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능력점수가 높지 않은 편으로 본인의 근로능력의사가 분명히 있어도 사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상 거의 없음 - 재량점수는 근로의지와 지속가능성에 점수를 줌. 재량점수가 결정적인 영향력이 없어 의지가 높은 대상자에게 점수를 후하게 부과함

<p>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점수표에 따라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 있다고 보지 않음. 적절과 부적절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함 - 재량점수는 근로를 참여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히 활용되고 있으나, 점수만을 가지고 참여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부과에는 어려움이 없고, 재량점수의 근거를 명백히 할 수 없으므로 확신하고 말고 고려한 적 없음
<p>#12 대도시,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점수표는 그냥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선발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음 - 기존의 상담내용을 통해 얼마나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따라 재량점수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거나 후회한 적이 있음
<p>#02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함
<p>#04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기준의 항목이 크게 4가지로 너무 단순화 되어 있어 적절한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움으로 현재보다 좀 더 세분화 되었으면 함 - 재량점수 부과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음. 다만 본인의 자활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경우에 의존하고 있음

<p>사례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시는지요? 결정한 후에 수급자와의 갈등은 없으신지요? 만약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자활사업 배치 후에 대상자에게 자활사업 및 참여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세히 안내하시는지요? 안내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자활사업이나 참여 업무에 대해 설명할 때 수급자들의 반응이나 이해정도는 어떤지요?
<p>#18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음. 최선을 다하여 설명함
<p>#21 중소도시,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함(갈등은 없음) - 정기적(주1회)의 가벼운 인사 등 만남을 가지며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음. ct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의견이 강함

II. 주요 내용 및 결과 27

<p>#30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가 자활프로그램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해주고 자활참여기관 등에 가서 상담 받기를 권유하고 있음. 상담 후 본인의 의사와 기관의 의사가 맞을 때 자활사업 참여하게 함 - 근로유지형이나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자활기관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업무에 대해 정확한 안내는 해주기 어려움
<p>#11 대도시,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으나 배치는 현실에 맞추어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활예산이 너무나 불규칙하기에 필요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배치하기도 함. 대상자의 불만은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p>#33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는 충분히 하지만, 지역특성상 자원부족(일거리, 교통편 불편)으로 근로 유지형으로 유도함. 하지만, 중앙에서는 근로유지형이 실질적인 자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줄이라고 함.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서는 지역 자활센터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로유지형을 함. 근로유지형을 못할 경우 조건제시유예자로 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남
<p>#24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가능여부 등 충분한 논의 후 자활사업 참여결정 - 자활사업 참여에 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인 관계로 사업에 대한 설명 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p>#29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자활프로그램 만족도 낮음- 자활사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자활도모 어려움 있음. 조건부 수급자 대부분이 단순 노무참여로 수급자 유지를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함
<p>#09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프로그램을 배치할 경우 거의 80% 이상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되어 강제적 참여가 높음. 이럴 경우 여성은 참여프로그램도 많고 구성원이 여성이 많아 적응도가 높으나 남성, 특히 20대 30대 경우 대부분 중도 탈락함
<p>#27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계획 상담 시 대부분 수급자 들은 본인의 환경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훈련을 희망하거나 사무직 등에서 일하고 싶어 함.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설명하나 사실상 자활프로그램이 수급자의 욕구만큼 다양하지 않아, 수급자에게 설명할 때 민망한 경우도 있음
<p>#13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의사에 맞춰 자활프로그램에 투입하기에 심한 갈등은 없으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정도임 - 자활사업 배치 전 사전교육을 하여 충분히 이해시키고 있으나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단이 없는 실정임, 여성의 경우 대부분 간병사업단에 한정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 특히 더 의뢰할만한 사업단이 없음

<p>#06 수도권, 시군구</p>	<p>- 다양한 자활사업을 안내하고 싶어도 자활사업이 다양하지 않고, TO가 없어 참여인원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자활사업의 다양성과 수급자 선택의 폭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됨</p>
<p>#31 농어촌, 시군구</p>	<p>- 자활프로그램 배치 시 수급자와 반드시 상담 등을 통하여 결정을 하나 추후에 일을 하다보며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자활사업 배치 후에 자활사업 및 참여업무에 대해 자세 안내하며, 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는 의식이 강함</p>
<p>#16 대도시, 시군구</p>	<p>-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음. 신청인의 적성, 욕구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근로유지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p>
<p>#25 중소도시, 시군구</p>	<p>- 자활사업 개시 전 충분한 상담과 적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에 배치하고 있으나, 수급자가 선호하는 자활사업과 자활실시 기관의 사업내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 ppt자료 및 리플렛 등을 제공하여 충분히 설명하지만 전반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나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급여, 근로시간) 높음</p>
<p>#28 농어촌, 읍면동</p>	<p>- 논의는 하지만 갈등은 있음.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한계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 할 수도 있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오히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임금보다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제하고 따져보면 근처의 노동시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자활계획 수립 시 이루어지는 초기상담이 전부임. 자활사업장과 담당자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읍면동이 아닌 자활사업기관에서 일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세부적인 일의 진행방식 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p>
<p>#07 수도권, 읍면동</p>	<p>- 자활사업의 종류를 이야기 해주고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자활을 신청함. 대부분 자활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음</p>
<p>#08 수도권, 읍면동</p>	<p>- 자활사업안내지침을 가지고 안내하고 있음. 수급자들이 이해는 하나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장에 얽매이는 것을 정기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 함</p>
<p>#14 대도시, 시군구</p>	<p>- 자활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추가 신청자의 경우 동 환경정비 외엔 없음. 젊은층에서는 부끄럽다며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있음. 그런 경우 소득 확인서 제출 유도함</p>

<p>#23 중소도시, 시군구</p>	<p>-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 된 자에 대하여는 참여자체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는 않음. 다만 그에 상당하거나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에 취업할 경우 조건제외 됨을 안내 함. 참여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활업무 담당자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자활센터의뢰대상은 자활센터에서 한 차례 상담을 더 시행 한 후 결정을 하고 있음. 설명과 안내는 충분하다고 생각함</p>
<p>#01 수도권, 시군구</p>	<p>- 대상자의 성향이나 욕구에 맞춰 자활프로그램에 배치를 하나 대상자가 우선 접하는 경험을 낮설어하고 대상자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불일치하는 부분 때문에 불만을 토로한 적은 있으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다는 처음 하는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불안 등이 대부분임</p> <p>- 초기면접부터 대상자에게 수급을 받을 경우 혜택이나 의무에 대해 주지시키고 자활사업 및 참여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나 처음에는 사실상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수급자들의 반응 또한 많이 부드러워지는 상황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활공동체 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짜고 본인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은 조금 주면서 나머지 돈은 직원들이 가로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음.</p>
<p>#17 대도시, 시군구</p>	<p>- 사업장이 빈약하여 충분한 상담 자체가 불가하며, 수급자는 힘든 곳은 무조건 피하는 경향이 있어 애로가 많음. 굳이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배치하고자 하면 현실적으로는 대기기간이 길어져 자활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가 됨</p>
<p>#05 수도권, 읍면동</p>	<p>-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 합니다. 본인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함. 이로 인한 갈등이 매우 많은 편임</p> <p>- 시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청 조사팀 직원 및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주고 있으며 잘 들으려고 한다면 문제는 없음. 또한 반응도 좋은 편이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갈등만이 있는 상황임. 사회적일자리 및 시장진입형 등은 해당 사업단 담당선생님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p>
<p>#19 중소도시, 시군구</p>	<p>-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 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도의 방침으로 수용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부분이 수급이 중지되기 싫어서 계속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수용이며, 대부분 근로의지가 약하거나 만성질환에 대해 지나치게 상병호소를 많이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활사업에 배치하게 되므로 근로여건에 대해</p>

	<p>여는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활센터와 직접 연결하여 상담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하므로 배치이후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담당자에게 들은 바와는 전혀 다르다는 반감을 표출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참여자간의 인간적인 갈등이나 의견차이로 자활사업의 참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와 충분한 논의 후 배치함. 우리 군은 지역자활센터가 없으므로 자활프로그램 배치, 수급자상담, 불만민원, 재배치, 급여지급 등 업무를 읍면과 군에서 직접 수행함. 따라서 자활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마찰이 빚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하고 있음
#12 대도시,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와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이 좀 더 쉬운 곳에서 일을 하려고만 해서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음 -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서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자가 선택할 폭이 좁고, 불만이 있더라도 수급권 유지를 위해 잘 참여하는 편이고, 사업에 대해 이해 정도는 높은 편임
#02 수도권,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의 종류가 적고 근로능력자를 자활사업 참여로 유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04 수도권,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대상자에게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만 하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자활센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함. 그리고 무엇보다 많지 않은 자활프로그램과 프로그램별 정원 문제로 인해 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즉시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러한 경우 대상자의 참여 기피를 불러올 수 있음 - 대다수의 수급자들은 자활사업 참여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경우도 드문 실정임. 다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나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됨

<p>사례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자활사업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시는지요? - 정보 획득이나 계획 수립 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요?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면 효과적일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요? - 대상자의 자활사업 투입 초기에 사업에 대한 이해향상,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요? 만약 없다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p>#18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에 의존하여 계획 수립 - 자활후견기관 담당자에게 대상자가 잘 적응하도록 미리 구두로 안내함
<p>#21 중소도시,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정확치도 없음
<p>#30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계획 수립은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담당자가 수급자가구 전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연령이나 기존 통합조사표에 기재 되어있는 자료를 보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자활사업 참여 적응을 위한 서비스는 없으며, 필요한 이유는 참여대상자가 근로기피가 아닌 적성에 맞지 않아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판정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임
<p>#33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와 필요한 대상자를 협의함.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계는 약함. 계획 수립에 대한 매뉴얼과 예시를 제시 해주었으면 함 - 유선으로 정보획득이 많이 되고 네트워크가 없어 어려움 - 자활사업에 대한 교육은 거의 못함. 대상자들이 자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더욱 더 자활의 성공률이 낮은 거 같음
<p>#24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수급자 상담 시

<p>#13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동료 직원, 공문, 지역자활센터 등 - 자활담당자 교육 등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수급자도 노동부 자활사업처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함
<p>#06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지침 및 자활센터에 의뢰하여 정보 획득
<p>#31 농어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계획 수립은 수급자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며 제대로 된 자활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확률이 높음
<p>#16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 받으면 개인별 상담자료 및 자활지원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어 정보획득 및 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되고 있음
<p>#28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획득방법 : 지침서, 업무담당자간의 정보공유 등 - 없음.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낮은 학력 및 자원, 경험 부족으로 쉽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임. 이에 초기에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거부감도 덜하고 좀 더 쉽게 적응하여 자활사업의 능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p>#08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시에서 자활사업 안내지를 배포함 - 어려운 점은 특히 없으며 노동부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노동부와 복지부사업을 통합하여 정보지를 매년 초에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음
<p>#14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정보획득 - 자활사업대상 수급자의 자질 및 기대치도 낮고 따라서 성과도 저조한 상태여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못 느낌
<p>#23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지침시달교육 또는 시달되는 공문에 의존하고 국민기초홈피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 - 근로능력 판정 또는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표준모델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진단서의 여러 유형에 대한 해석과 어느 선까지가 근로능력이 있고 없는지를 기준을 공유하였으면 좋겠음 - 기초적응 훈련과 프로그램이 있다. 효과 면에서는 큰 비중 있는 경우라 볼 수 없지만 이러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p>#01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원하는 바(통합조사팀 상담내역 참고)를 구청 자활담당자와 의논하면서 획득하는 편임 - 군대입대에정일, 대학생 재학여부,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내용 등 일관 정보제공 필요 - 직업적응훈련이나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있음
<p>#17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절차와 지역자활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보 획득함 - 계획수립은 예산상의 제약을 받아 애로가 있음 - 서비스가 필요하며 현재 일부지역에서 “자활사업사례관리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지역으로의 확대가 절실함
<p>#05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서 필요정보를 내려주고 있는 상황임. 수시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구청에서도 바쁜 상황이면 실시간으로 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의 현황이 수시로 사업단별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각 사업별 필요인원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것을 내려주면 상담 시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서비스는 없지만 각 사업단에서 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음. 본인 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임
<p>#19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수립은 초기상담에 의해 자활수립을 하고, 이후 각 세대별 상담기록 및 자활기관의 사업내용을 참고함 -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시간 확인을 위해 자활센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현 새울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면 함 - 대상자가 참여하게 되는 사업에 대한 이해는 해당 주관사업장에서 시행함. 동에서는 해당기관에 참여대상자를 의뢰하고 있음. 자활사업의 취지 및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설명함에도 대부분은 많이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의 담당자들이 다시 한 번 강조 및 안내를 해주었으면 함
<p>무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가 없고 담당자 혼자 자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건이 비슷한 시군구의 사례를 활용, 시행하기도 함 - 정보 획득이나 계획 수립을 할 때 다양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는 하고 있으나, 자활외의 업무도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됨. 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역여건(농어촌, 산간오지, 등)을 충분히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자활사업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해향상, 적응 등을 지원하기위한 서비스는 불필요함

<p>#02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자 및 전달사항으로 정보 수집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 서비스가 없음. 자활사업 참여자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대부분이고 본인 가구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는 극소수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임금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 해야 함
<p>#04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총괄부서(사회복지과)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 - 대상자의 자활사업 초기 이해향상 및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과정(1주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p>2-4 사례</p>	<p>- 근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근로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수급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런 대상자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요?</p>
<p>#18 중소도시, 시군구</p>	<p>- 무수히 많다. 국가의 예산 낭비가 걱정됨</p>
<p>#21 중소도시, 읍면동</p>	<p>- 자활사업 참여가 아니라 직장을 알선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역량이 되지 못함. 취업에 대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노동부에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p>
<p>#30 농어촌, 읍면동</p>	<p>- 젊은 사람일수록 근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받고 단순노무나 사업등 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받는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 라는 말을 많이 함. 즉 개인사업자나 일일고용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렇게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걸 악용해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 개인사업자나 일일고용 근로자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함</p>
<p>#71 대도시, 읍면동</p>	<p>- 진단서 및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를 회유해서 허위 진단서(개인소견)를 제시하기도 함. 한심한 생각이 들며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됨. 중증 질환자 이외의 모든 진단서는 근로가능하리라 사료됨(과거 생활</p>

	<p>보호법처럼 근로가능 연령에 대해서는 혜택만 주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금급여는 재검토할 필요를 느낌). 단, 진단서상에 근로불가능의 경우는 인정함</p>
#10 수도권, 시군구	<p>- 자발적인 근로의지가 낮다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과 근로하는 사람에 비해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p>
#33 농어촌, 시군구	<p>-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음.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하는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는 사람을 보면 알미움. 자신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을 없는데 권리만 주장하니 답답함</p>
#24 중소도시, 시군구	<p>- 전체수급자 중 근로회피자가 많지 않으나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다른 근로요인이 있는지 정확한 수급자 실태조사를 필요로 하며 개인적인 불성실로 근로에 대한 회피 시, 제반지원 등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p>
#29 농어촌, 시군구	<p>- 자활사업 조건 부과로 수급자 신청 시, 본인이 단순노무 및 농촌 일용근로에 참여할 경우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수급자 초기 상담 및 신청 시 근로능력여부, 근로무능력, 자활사업 참여 조건제시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있음</p>
#13 대도시, 시군구	<p>- 근로 회피자가 상당수임, 제도상의 맹점이므로 대상자만 탓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평생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됨</p>
#06 수도권, 시군구	<p>- 근로능력 있으나 근로회피자는 5% 내외라고 생각되며, 지침 규정을 알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음. 자활을 유도하나 한계가 있음</p>
#31 농어촌, 시군구	<p>- 대중에 2-3%가 있으며 그런 대상자들을 만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일 하는 분위기를 흐트리므로 자활사업 참여를 배제하고픈 마음이 앞서나 혼자서 추스르며 추이를 지켜봄</p>
#16 대도시, 시군구	<p>- 55%~65% 정도임. 비양심적이며, 좀 더 세밀한 조사(비취업대상에서 취업대상자로)를 유도해야 함</p>
#28 농어촌, 읍면동	<p>- 근로 가능한 수급자의 1/3정도는 기피한다고 생각함.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 등은 하면서, 일을 하라고 안내를 하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질병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수급자 보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층의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됨. 또한, 진단서 등을 사유로 일을 기피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근로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향도 있음</p>

#07 수도권, 읍면동	- 30%가량 됨
#08 수도권, 읍면동	- 물론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듦. 제가 보기에는 근로능력이 있어 보여도 질병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고 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서만 확실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함
#14 대도시, 시군구	- 10%정도로 추측. 수급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함
#23 중소도시, 시군구	- 전체 수급자의 10% 이상이 이 경우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 됨. 수급자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근로를 회피하던 열심히 일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담당자를 효과적으로 속이면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됨. 그리고 이러한 수급자들을 대면하여 상담을 하여 에너지를 소비하여 봤자 1년에 2달(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이상은 합법적으로 놀리는 결과가 되어 담당자의 입장이 우습게 되는 사례도 있음. 그러한 수급자들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고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감정을 소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01 수도권, 시군구	- 10명 중 2명 정도로 개인의 역사를 보면 살아온 가정환경이나 성격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개인성향으로 굳어져 회복불가능한 사람이 있어 많이 안타까움
#17 대도시, 시군구	- 50%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활의욕이 없으므로 자활사업사례관리사의 배치가 필요함
#05 수도권, 읍면동	-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구나 또한 다른 일을 하면서 부가 급어로 받으려고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듦
#19 중소도시, 시군구	- 근로능력자들 중에 약 10~ 20%는 근로를 회피, 불성실할 것으로 판단됨. 보충적인 급여체계에서는 본인의 성실신고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함으로 성실신고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됨
무명	- 일부지만 근로를 회피, 불성실한 수급자가 있음. 물론 진단서를 징구하여 근로를 면제하고 필요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뒷조사를 할 때마다 '나, 복지사 맞나?'하는 생각을 하며, 끝까지 부적합.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추가소득(?)이 필요하겠지, 나도 내 월급으로는 항상 적자인데, 오죽하려나!' 하며 내 스스로 긍정의 위로를 함.

<p>#02 수도권, 시군구</p>	<p>- 생계비도 타고 담당자 속이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들이 많으며, 이런 수급자들은 매우 불쾌하고 담당자를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듦</p>
<p>#04 수도권, 읍면동</p>	<p>- 근로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은 순전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제재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다만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급여중지 등을 결정을 하고 있음.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패널티 적용이 온전히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자활프로그램이 수급자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p>

다. 자활대상자 관리

<p>사례 3-1</p>	<p>-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특히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대상자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기간이나 임금수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상태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자활사업 참여유형별(취업,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대상자 관리에 차이가 있나요?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대상자별로 근로 의욕이나 일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p>
<p>#18 중소도시, 시군구</p>	<p>- 이루어지고 있다. 평균 근로기간이 일정 치 않으며, 일용직들의 소득산정 적용이 어려움 - 큰 차이가 없음. 근로능력 여부의 어려움이 많으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들이 전무함</p>
<p>#30 농어촌, 읍면동</p>	<p>-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대상자의 평균적인 근로기간은 10일~15일정도 잡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단순노무는 일일임금 55천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음. 근로상태 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읍, 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는 복지도우미나 급식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p>

	<p>가 많은데 대부분 담당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항상 같이 일하기 때문에 수시로 상담할 수 있지만, 근로유지형은 외부에서 근무하고 단순작업들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근로의욕적인 부분에서도 근로유지형은 시간 때우기식으로 참여하고 있음</p>
<p>#11 대도시, 읍면동</p>	<p>- 별다른 차이가 없음. 근로의욕은 개인별로 편차가 심하며 현재 주어진 부분에 대한 업무수행 외엔 자활의지가 대부분이 희박함. 실제로 자활을 하고자 하나 주변의 여건(질병, 부양가족으로 인한 근로제한)이 쉽지 않음</p>
<p>#10 수도권, 시군구</p>	<p>- 수급자 대부분의 취업형태는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으로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매우 불안정함. 특히 영유아가 있는 모자가정으로 경우 근로시간이 맞지 않아 취업하기가 힘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자녀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과 근로여성일 경우 초과되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함</p>
<p>#33 농어촌, 시군구</p>	<p>-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반노동시장의 경우 자활사업에 비해 1.5배정도 많음. 자원부족(교육기관)으로 지원이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 사회적일자리형의 경우 지역자활센터나 읍면 복지도우미로 일을 해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그러나 근로유지형의 경우 젊은 사람의 경우는 부끄러워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유지형은 단순한 일이라서 자활이라기 보다는 돈을 받고 시간을 때우려는 경향이 있음. 취업자의 경우 1년에 2~3번 소득신고를 받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매달 자활소득을 확인함</p>
<p>#24 중소도시, 시군구</p>	<p>-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게 됨으로 20~25일간, 50~100만원의 소득이 파악됨. 근로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함</p>
<p>#13 대도시, 시군구</p>	<p>-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는 매월 지역자활센터에서 통보되는 근무상황부 및 임금 지급내역을 통해 관리.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대상자의 경우 평균 근로기간은 2~3개월, 평균 임금수준은 60~70만 원 정도로 소득의 경우 본인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로상태 향상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는 미미한 편임. 한편, 본인의 실제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고 보며, 근로상태의 향상 또는 개선보다는 수급유지가 대상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듯함</p> <p>- 근로유지형 보다는 시장진입형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가 근로의욕이나 일하는 태도가 다소 적극적인 편임. 이는 인건비가 다른 사업보다는 다소 높</p>

	고, 같은 조건이면 자활장려금도 많음을 알고 참여하기 때문임. 취업대상자 중 직업훈련자의 경우 훈련 종료 후 대부분 바로 취업과 연결되지 않을 뿐더러 다시 일반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직업훈련을 역이용하여 2~3회 계속 받으려고 하는 수급자도 있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06 수도권, 시군구	- 근로유지형 보다는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의 의욕이 더 넘침
#31 농어촌, 시군구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정임 - 근로의욕이나 일하는 태도에 있어 더 많은 노임을 받은 경우가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차이가 있음
#25 중소도시,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급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이나 태도가 양호한 편임. 수급기간과 근로의욕은 반비례 하는 것 같음 - 수급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이나 태도가 양호한 편임. 수급기간과 근로의욕은 반비례하는 것 같음
#28 농어촌, 읍면동	- 매달 자활급여를 확인하여 소득반영을 하고 있고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대상자 유형은 현재까지 없었음 -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됨
#07 수도권, 읍면동	- 조건불이행자 말고는 일을 하고자 하는 수급자로 대체로 근로에 충실함
#08 수도권, 읍면동	- 자활사업 참여자는 매월 자활센터 사업장에서 급여내역과 참여일수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어려움은 없음 - 동에서 하는 대상자 관리는 별 차이가 없음. 참여유형별은 저 같은 경우 초기상담 시 함께 사업단의 특징이나 유형을 설명해 드리고 맞는 사업단을 선정하고 지역자활센터와 논의 후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함. 물론 근로의욕이 높은 분일 수록 시장진입형을 선호함. 처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근로유지형을 권해드리고 있음
#23 중소도시, 시군구	-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대상자의 근로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나 관리는 현행 조직과 인력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은 별다른 차이는 없는 듯 함. 그러나 근로유지형은 생계급여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동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활의지가 타 사업단 보단 약하며 공동체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자활의지가 강함
<p>#01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간은 평균 20일 이상으로 임금수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내용을 확인하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비정기적 현물지원 등) 동기를 부여함 - 사회적 일자리형과 근로유지형의 경우 일에 대한 의욕이나 태도가 불성실하고 불만이 많으며 맡겨진 일이 힘들고 많다고 생각하여 취업이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차이를 보임(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급에 길들여져 있지 않아 자활의지가 높은 편이고 성실함). 취업이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차상위자활 사업 대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건부수급자들에 비해 더 자활의지가 높음. 하지만 같이 일을 하면서 조건부수급자들이 건성으로 일을 해도 본인들보다 더 넉넉한 생활(정부지원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일을 하기 싫어진다는 불만(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p>#17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활공동체의 경우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3년 넘게도 관리하고 있음 - 근로유지형과 그 외의 유형은 근로의욕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관리에 있어서도 근로유지형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며, 다른 유형에 대하여는 실적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p>#05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활센터 및 해당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일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해당동 근로유지형 대상자들만 관리가 가능함. 취업의 경우 가구원이 많지 않고는 거의 중지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또한 중지되지 않을 정도의 일만함 - 근로의욕들은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등으로 나름 급여가 많은 편이라 의욕있게 일하고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어도 자활특례자로 보호되기 때문에 의욕이 있지만 시군구 근로유지형 등 근로유지형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액이 많이 줄어 의욕이 없는 편임
<p>#19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대상자 중 비취업대상자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로 일을 하는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들은 대부분 계속 참여를 희망하여 꾸준히 근로하고 있음 - 자활사업 참여유형별(시장진입, 인턴, 사회적일자리 등) 근로의욕이나 태

	<p>도는 별반 다르지 않음. 관리 시 1년 연중참여가 가능하지 않아 쉬는 동안의 생계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시장형 이상의 사업 참여자들은 적극적이며 탈수급하려는 근로의지가 높은 점을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외의 사업장은 현 사업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강함</p>
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활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경우는 조건부과제외자로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만 근로기간, 근로상태까지는 관리를 잘 못함 -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을 올 하반기부터 장려금을 미지급하여 업그레이드형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의욕, 근로능력 등이 업그레이드형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임금과 반비례하는 생계비와 근로 강도, 시간 등을 이유로 업그레이드형으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02 수도권,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및 동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근로유지형 참여자로 인원에 비해 근로량 및 근로 종류가 적어 재활용품 분리 및 청소 등에 참여하는 한계가 있음 - 근로유지형 이외의 참여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를 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정도, 참여의지,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04 수도권,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대상자의 대부분은 임시·일용고용 등의 형태로 평균 근로일수는 10~20일 경이며 임금 규모는 일당 20,000원~30,000원 수준임.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관리는 없는 상태임 -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관리방식의 차이점은 없으며, 관리는 사실상 지역자활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근로의욕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근로 능력에 비례하여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3-2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관련 기관 간 또는 담당자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는지요? 그러한 교류를 활성화시킬 만한 모임이나 활동이 있는지요? - 현재 자활관련 기관 간 또는 담당자 간에 네트워크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활발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노력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8 중소도시,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교류는 활발하지 않음 - 기관과 담당자 간의 잦은 만남 또는 업무 교육 연찬 등이 요망됨
#30 농어촌,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관련 기관 간, 담당자간 교류는 많지 않음. 특별한 지침변경이나 행사가 있을시 만난 것뿐임 - 네트워크 시스템이 부재한 이유는 각자 업무에만 충실하기 때문 아닌지 생

	<p>각함. 사회복지 담당자는 수급자가 근로 할 수 있도록 자활기관에 의뢰 했으니 그 후의 사후 관리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조건불이행 등의 공문이나 연락을 받게 되면 그 후의 업무처리만 신경 쓰고 있음. 자활기관도 수급자가 관리가 어려워지면 조건불이행 등으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함. 조건불이행으로 통보를 받아 수급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일을 하기 싫어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가 아님을 확인 할 때가 있음.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관에서의 적응기간을 줘서 그 기간 동안 사회복지담당자와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참여자의 적응여부를 확인한 후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함</p>
#11 대도시, 읍면동	<p>- 특별한 교류는 없으나 대상자의 자활유도보다는 대상자로부터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예, 간병서비스, 집수리사업단 등)</p>
#10 수도권, 시군구	<p>-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활동을 통해 민간기관과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음</p>
#33 농어촌, 시군구	<p>- 거의 없다. 기관과의 교류도 없지만, 중앙과 도, 시군, 읍면과의 연계도 거의 없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게시판을 보면 유명무실함. 읍면에서 질문을 하면 거의 답이 없음. 정기적인 교육은 아니라도 사이버 상에서라도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으면 함</p>
#24 중소도시, 시군구	<p>-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등 있음</p>
#29 농어촌, 시군구	<p>- 본청과 자활기관간의 교류 활발함(보조금 지급 및 자활기관 운영관리) - 자활기관 사업 다양화, 담당자 다양화로 일선 읍면 담당자와 교류 활발하지 못함(약손간병사업 외 11개 사업, 집수리사업외 2개 공동체 창업,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p>
#13 대도시, 시군구	<p>- 현재 지자체 주관으로 연 1~2회 정도 워크숍을 하고 있으나 별도로 모임이나 회의를 하는 등의 활발한 교류는 거의 없음</p>
#06 수도권, 시군구	<p>- 교류 미비</p>
#31 농어촌, 시군구	<p>- 활발한 교류가 있으며,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활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p>

<p>#25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의 전국 네트워크와 경남지역 네트워크, 지역 내 권역별 네트워크, 연 1회 정례적인 민·관네트워크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p>#28 농어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간담회식으로 계획은 세우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성화하려면 형식적으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씩은 자리를 만들어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포를 한다면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p>#07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모임은 없으며 일을 불이행할 경우 교류가 활발해짐
<p>#08 수도권,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대표적인 지역자활센터와 수시로 연락하고 있음.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p>#14 대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장업무에 있어서 자활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임. 1년에 한번정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 전체의 업무교육 필요함
<p>#23 중소도시,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관 간 활발한 교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노동부와는 별다른 정보교류가 없음. 또한 우리가 여기기엔 노동부에서는 자활사업 자체를 자신들의 업무라고 여기는 정도가 낮은 것 같음. 노동부의 인트라넷을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고용보험가입여부 등의 조회 등을 통한 직업이력 검색을 자활상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노동부와 지자체 간 자활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그리고 쌍방 간의 연찬회 등이 있었으면 함. - 자활관련 민간기관에서의 담당자 이직률이 높아 이런 면도 하나의 어려움인 것으로 보여짐.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인력의 여유도 부족함
<p>#01 수도권, 시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일단 민간기관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관공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상황임. 민관의 네트워크 활성을 위해 예산부터 마련하여 년 2회 이상의 정보교환을 위한 워크샵이 필요함 - 자활관련 민간기관에서의 담당자 이직률이 높아 이런 면도 하나의 어려움인 것으로 보여짐.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인력의 여유도 부족함

44 2008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II: 자활프로그램 참여

#17 대도시, 시군구	- 한국자활사업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는 광역자활센터가 있어 광역자활센터 중심으로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05 수도권, 읍면동	- 활발한 경우는 거의 없음. 대부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편이고 또한 담당자들 간의 업무의 차이로 대부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19 중소도시, 시군구	- 자활기관과의 교류는 거의 없으며 1년에 1회 가량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성화된 모임은 없음 - 자활기관과 복지담당자와 의견차이가 있음. 기관 간 관리규칙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각 기관의 운영 목표가 상이하서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예를 들어 복지담당자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조건부수급자나 근로가능자는 일을 시키려고 하고, 자활기관 담당자는 실적 저하 및 대상자가 근로 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다는 이유로(알콜리즘등) 자체 규정에 의해 자활근로에서 배제시키려고 함
#12 대도시, 읍면동	- 특별한 모임이나 활동은 없음
#02 수도권, 시군구	- 활발한 교류는 없는 편이며 시각의 차이는 복지담당공무원은 정확하고 명백한 사유에 의하여 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반면 자활관련기관은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수급자를 보는 시각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활발한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선정 시 복지담당자들과 워크숍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04 수도권, 읍면동	- 자활기관과 읍면동의 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읍면동 담당자간의 모임이나 교류는 있으나 자활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친목수준에 머물러 있음 - 민·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본 적은 있으나 기관 간의 인식차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송해육, 중계4동사무소)

3-3 사례	- 자활사업 업무 수행 시 지역자활센터나 관련 업무기관 담당자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등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사례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

#18 중소도시, 시군구	-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생각하나 별도의 사례관리 체계 구축은 없음. 잦은 만남이나 정보교류가 필요함
#11 대도시, 읍면동	- 자활센터와는 긴밀한 업무협조를 구하고 있음
#33 농어촌, 시군구	- 거의 없음
#24 중소도시, 시군구	- 있음(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센터 내 프로그램 개발 참여)
#29 농어촌, 시군구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에 대해 정보 공유함
#27 농어촌,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자활사업 관련기관과는 유선 또는 자활기관 협의체 등을 통한 의견교환 등으로 업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13 대도시, 시군구	-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혹 대상자에게 특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전화로 의논하는 정도임. 별도의 사례관리 체계 미 구축 상태이며,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할만한 시간적·행정적 여건이 안 된 편임
#06 수도권, 시군구	- 업무과중으로 자활사업에 큰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음. 교류 또한 미비함
#31 농어촌, 시군구	-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25 중소도시,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와 격월 단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16 대도시, 시군구	- 업무기관담당자와 대상자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항상 조율하고 있음
#28 농어촌, 읍면동	-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이사항이 아니고는 기관에서 상담 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음

#07 수도권, 읍면동	-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는 한에는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관리를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관여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움
#08 수도권, 읍면동	- 의견교환이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14 대도시, 시군구	- 교류 거의 없음. 구청 자활담당자 통해 처리함
#23 중소도시, 시군구	- 정보 공유,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노력은 하고 있음. 그러나 자활센터 직원은 관의 입장도 아닌 수급자의 입장도 아닌 입장으로 기관의 편리성과 입장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된 사례관리 방향 설정에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따라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01 수도권, 시군구	- 구청 자활사업 담당자를 통해 구의 자활사업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함. 담당자가 맡은 업무 중 비중이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7 대도시, 시군구	-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으며, 별도의 사례관리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 이유는 인력부족임
#05 수도권, 읍면동	- 별도의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지는 않고 있음. 다른 업무들의 관계로 인해 네트워크를 연결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19 중소도시, 시군구	- 자활담당자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행태 등에 대한 정보교류는 없음. 읍면동담당자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을 의뢰 후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고 수급자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때 필요시에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도의 사례관리 체계는 없음
#12 대도시, 읍면동	- 담당자가 자활사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까지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함. 자활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했을 경우 센터,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상담하는 정도임
#04 수도권, 읍면동	-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등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는 없는 상태임. 이러한 체계의 부재 이유는 기관 간의 인식 차이,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미비 등임

라. 조건불이행,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

<p>사례 4-1</p>	<p>- (추정소득 부과 단계에서 소득허위신고자) 지침에 따르면 취업 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없다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별도의 조치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노력하시나요?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는지요?</p>
<p>#18 중소도시, 시군구</p>	<p>- 없다. 보장비용 징수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됨. 별도의 보장비용 징수 기관을 빨리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면 함 - 소득 허위 신고자들이 너무 많음(요즘은 미리 주위의 분들에게 자문 등을 받아 어떻게 하면 많은 수혜 등을 받을지를 알아보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담당자들도 감당이 되지 못하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님(예산은 늘어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p>
<p>#30 농어촌, 읍면동</p>	<p>- 지침에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음. 부정수급자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중지요청을 하거나 기존에 지급하였던 생계비를 차감 처리하는 선에서 정리함. 법률적 조치의 처리 절차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음</p>
<p>#09 수도권, 읍면동</p>	<p>-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소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주까지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발은 너무 심함.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법률 전문가가 있는 의뢰기관이 있었으면 함</p>
<p>#33 농어촌, 시군구</p>	<p>- 조치를 취한 적은 없음. 소득이 있다고 추정은 하지만, 확실한 현장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됨. 동네 주민과 이장님과의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함</p>
<p>#24 중소도시, 시군구</p>	<p>-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조치. 국민연금수급 및 자녀의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을 미신고함으로 소득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안내함</p>
<p>#29 농어촌, 시군구</p>	<p>- 법률적 제재 없음</p>

<p>#13 대도시, 시군구</p>	<p>- 법률적 제재를 가한 적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이 조회되나, 그 외에는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 허위로 신고하여 추후 적발 되었을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수급자 중지만 함. 일부 지역에서는 고의성이 짙은 최악의 경우 기존 급여지원액을 상계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적발 시부터 급여 조정을 함</p>
<p>#06 수도권, 시군구</p>	<p>-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대부분이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이라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움. 대부분 본인의 신고에 의존</p>
<p>#31 농어촌, 시군구</p>	<p>- 법률적 제재를 가한 적은 없으나 조건불이행이나 부정수급의 경우 급여를 중지시키고, 보장비용을 징수함</p>
<p>#25 중소도시, 시군구</p>	<p>-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적 제재를 인지시키고 다시 소득 신고를 받아 소득으로 부과함</p>
<p>#28 농어촌, 읍면동</p>	<p>- 없음 :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해 질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겁부터 먹게 되어 쉽지 않은 듯함.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 않으나 신청조사나 확인조사 시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안내를 하고 가능한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정도임</p>
<p>#07 수도권, 읍면동</p>	<p>-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근로자체가 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실질적인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 소득판정에 어려움이 있음. 객관적인 소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p>
<p>#14 대도시, 시군구</p>	<p>- 허위신고 증명자료를 찾기가 불가능한 현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방법 없음</p>
<p>#23 중소도시, 시군구</p>	<p>- 대부분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된 임시·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와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지만 간혹 고용주와의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고 소득의 조정을 통하여 급여감소 또는 중지 처리하고 있음. 국민연금소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득 및 취업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적극 추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수급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료급여 납부 예외자에 해당하여 사회보험의 가입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득조사에 허점이 되고 있음</p>

<p>#01 수도권, 시군구</p>	<p>- 법률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단 부정수급을 알게 된 경우 소득 허위신고자는 실소득이 수급자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자격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상계처리하고 수급자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정수급자로 중지시키거나 월등하게 큰 차이가 날 경우 보장비용 징수처리를 하기도 함</p>
<p>#17 대도시, 시군구</p>	<p>- 법률적 제재를 가한 적 없음. 법률적 제재를 가하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부정수급금을 환급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p>
<p>#15 대도시, 시군구</p>	<p>- 허위신고 증명자료를 찾기가 불가능한 현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방법 없음</p>
<p>#05 수도권, 읍면동</p>	<p>-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공부상 및 실태조사 적발 시 구청에 부정수급자 조치를 하고 중지 및 생계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함. 일반적으로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득파악이 힘들고 또한 일을 하는 것조차 알기 힘든 경우가 많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지를 시키긴 하지만 수급자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음</p>
<p>#19 중소도시, 시군구</p>	<p>- 전산자료가 없는 일용직등의 소득신고는 지극히 주관적인 자료이므로 허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 전산자료 및 중점관리대상자 조회 자료 통보로 인하여 소득허위신고가 밝혀져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는 보장비용 환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임. 대부분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성실신고에 의존할 경우 매우 낮은 소득을 신고하므로 근거없는 추정소득으로까지 와전되어 수급자와 갈등을 빚게 됨. 필요시 불시에 가정방문이나 연락 등을 취해 현장을 포착한 경우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p>
<p>무명</p>	<p>- 국민연금 등 자산자료조회로 드러나지 않는 일일고용자들의 소득은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만약 적발한 경우 그것으로 인한 수급중지, 급여감소를 이해시키고 수급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일 것임. 그래서 별도의 고발조치 등을 취한 경우는 없으며,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노력하는 편임</p>
<p>#12 대도시, 읍면동</p>	<p>-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한적은 없으며 대상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경우는 있음. 절차복잡과 시간,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재를 가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설득하고 있음</p>

<p>#02 수도권, 시군구</p>	<p>- 법률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으며 실제 소득을 확인한 후 수급자 중지 및 부정수급액을 환수함</p>
<p>#04 수도권, 읍면동</p>	<p>- 신고 누락, 허위 신고 등을 발견했을 때 환수조치(상계처리, 보장비용 징수)는 하고 있으나 실제 법률적 제재를 가한 경우는 없음. 법률적 조치에 대한 부담과 조치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의 복잡, 처리능력 부족 등이 원인임</p>
<p>사례 4-2</p>	<p>-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실시기관, 고용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았을 때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요? 조치를 취했을 때, 수급자의 반응은 대체로 어떠한가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주세요.</p>
<p>#18 중소도시, 시군구</p>	<p>- 조취를 취함. 수급자의 반응은 변명이 대부분임. 자주 갈등이 발생하나 명확한 방법이 없음</p>
<p>#30 농어촌, 읍면동</p>	<p>-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으면 지침에 따라 생계비 중지하고, 참여자와 상담을 통해 다른 자활사업이라도 참여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 한다고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생계비지급을 중지함. 조건 불이행 조취를 취했을 경우 불만이 많음. 이유는 참여자가 조건 불이행을 하게 된 경위나 사실 확인 없이 자활기관에서 조건불이행 통지서만을 가지고 불이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큼.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 사업단에서 일하다 조건 불이행으로 통보 받은 대상자가 있었음. 서천군의 경우 남자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자활사업은 집수리 사업단 밖에 없었는데 이 참여자의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에 출근하기 까지 자전거와 2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였음. 가을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을 시도했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자전거로 출근할 수 없게 되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임. 이 참여자와 상담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형이 아닌 근로유지형으로 변경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함</p>
<p>#11 대도시, 읍면동</p>	<p>- 지자체는 늘 예산의 부족으로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기가 곤란. 진단서를 통해 근로능력에 따른 적정한 소득을 부여하고 있음. 실제로 본 지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유지형을 모두 없앴(예산부족)</p>

#09 수도권, 읍면동	- 조건불이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추정소득을 부과하거나 가구원 1인 생계비 중단 등을 적용함
#33 농어촌, 시군구	- 조건불이행을 한 적은 없음
#24 중소도시, 시군구	-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중지에 따른 불안감으로 한차례정도의 참여의지를 보이나, 근로의 기본적인 의식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참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방면의 관리를 하고 있음
#29 농어촌, 시군구	- 조건 불이행에 대해 수급자 인식, 사전에 상담 종료상태가 대부분임
#13 대도시, 시군구	- 지침에 따라 처리. 불이행시 경우에 따라 수급자 중지가 됨을 기존에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하는 수급자도 있지만, 대체로 일자리에 대한 수준과 급여 수준에 대해 항의. 갈등 발생시 마땅히 처리할 조치 방법이 없음. 다른 사업까지 불참할 경우 추정소득 부과함
#31 농어촌, 시군구	- 지침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조금 있음
#16 대도시, 시군구	- 매월 불이행자에 대한 공문을 보내 동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유도함
#28 농어촌, 읍면동	- 조건불이행 시 지침에 따라 급여중지 처리를 하였으며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나 수급자 자격은 유지되고 주거급여는 지급이 되는 탓에 더 이상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3개월마다 재확인을 하나 계속 조건이행은 하지 않음. 이런 경우 계속 생계급여만 중지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정하여 중지를 하던지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07 수도권, 읍면동	- 조치를 취하여도 이미 자활사업에 관심이 없는 대상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수급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
#08 수도권, 읍면동	- 조치를 취하고 있음. 수급자의 반응은 초기 자활사업 참여 상담 시 충분히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었음

<p>#14 대도시, 시군구</p>	<p>- 전체적인 사업취지 설명해서 이해시킴</p>
<p>#23 중소도시, 시군구</p>	<p>-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불만은 나타내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침대로 처리하고 있음</p>
<p>#01 수도권, 시군구</p>	<p>-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변명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요구하다 결국 수궁을 함</p>
<p>#17 대도시, 시군구</p>	<p>-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음. 대부분이 인정하나 극소수가 부당하다고 하나 대체로 상담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음.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에 투입하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각서 등을 징구 받아 사전에 관리에 갈등 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p>
<p>#15 대도시, 시군구</p>	<p>- 전체적인 사업취지 설명해서 이해시킴</p>
<p>#05 수도권, 읍면동</p>	<p>- 일단 불이행사유를 상담하고 불이행사유가 맞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함. 조치를 취할 경우 매우 불만사항이 많으며 관련서류 제출 및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으로 처리하고 있음</p>
<p>#19 중소도시, 시군구</p>	<p>- 조건불이행의 경우가 거의 없으나 불이행할시 해당자 1인분의 생계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 큰 갈등이 없는 편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해 조건부과하여 취로사업에 참여 중이었던 대상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생계비를 삭감하였으나 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음. 다만 대상자들이 삶의 의욕이 없어 슬로 세월을 보내는 나날이 많아 생계비 삭감 등으로 자활의욕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음. 결국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 이후 조건제시유예자로 변경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p>
<p>무명</p>	<p>- 고용지원센터에 의뢰한 적은 있으나, 아직 조건불이행을 통지받은 사례는 없다. 자활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조건불이행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즉시 지침에 의거 급여 또는 수급중지를 함</p>
<p>#12 대도시, 읍면동</p>	<p>- 통지를 받은 경우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임</p>
<p>#02 수도권, 시군구</p>	<p>-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추정소득 부과함. 초기단계에는 갈등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수궁하고 있음</p>

<p>#04 수도권, 읍면동</p>	<p>- 조건불이행의 경우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음(급여중지, 추정소득 부과 등). 조치 결과에 따른 수급자와의 갈등은 매우 큰 상태임. 자활대상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가구의 전체적인 급여 지급내역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p> <p>* 사례 : 3인가구, 세대주-정신질환, 모-65세 이상 노인, 자-21세, 조건불이행자/ Ct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조건부과 하였으나 불이행하여 급여중지 되었음. 조건불이행 자녀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며 그러한 사유로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음. 더 이상의 조건이행이 어려운 상태임.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근로능력이 없어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 Ct가 조건불이행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조치, 자녀가 주민등록을 복원한 후 실거주지로 전출, 부양의무자로 등록, 근로상태 파악이 어려워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p>
-----------------------------	---